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6,000,000	30,180,000
일반회계	860,300,000	25,809,000
특별회계	145,700,000	4,371,000
공기업특별회계	57,900,000	1,737,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300,000	999,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600,000	738,000
기타특별회계	87,800,000	2,634,000
수질개선특별회계	5,070,000	152,1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477,000	74,3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843,000	25,290
주택사업특별회계	780,000	23,400
치수사업특별회계	14,273,500	428,205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080,000	212,400
대지보상특별회계	270,000	8,10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3,365,000	1,300,95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300,000	399,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41,500	10,24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명세서" 와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395,921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8,603,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179,216천원, 내부유보금 4,613,705천원)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